

『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의 국·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

3. 주요내용

- 장기근속자 국내·외 연수 대상 조정(안 제15조제8호가목)
 -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→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공무원법」

5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현행 조례상 국내·외 연수대상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명예퇴직자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당연퇴직, 의원면직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 대두되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의 국·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.